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85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 : 김 윤 · 김남희 · 남인순

허성무 • 박홍배 • 서미화

윤종오 • 강선우 • 허종식

백혜련 • 박희승 • 박주민

전진숙 • 전종덕 • 소병훈

이용선 • 박지원 • 채현일

이재강 • 김우영 • 한창민

유동수 · 장경태 의원

(2391)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,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,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함(안 제5조).
- 나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,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,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,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(안 제6조).
- 다.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질병 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 (안 제7조).
- 라.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마.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

3조).

- 바.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사. 이 법 시행 이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3조)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코로나19 예방접종"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-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국민에게 실시한 예방접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5조(국가의 피해보상 등)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, 장애, 사망(이하 "질병등"이라 한다)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,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결과에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 - 1.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: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

- 2. 장애인이 된 사람: 일시보상금
- 3. 사망한 사람: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-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본인(단,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)
- 2. 제1항제3호의 경우: 유족 중 우선순위자
- ③ 제1항제3호의 유족이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, 손자·손녀, 조부모, 형제자매를 말한다.
- ④ 유족의 순위는 제3항에서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,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,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(제6조에 따라 인과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 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한다.
- ⑥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·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1조를 따른다.
- 제6조(인과관계의 추정)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·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인과관계

- 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
- 2.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
- 3.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,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
- 제7조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(이하 "보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의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
 - 2. 법학, 행정학, 사회학, 의학, 병리학, 약학, 미생물학,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4명
 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
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
- ④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8조(위원의 결격 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면직되거나 해촉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5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

를 한 경우

- 6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②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의견제출)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, 그 밖에 해당 전문가(이하 "전문가 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피해조사) 보상위원회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- 제12조(피해보상의 결정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 보상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 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

- 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 단·검사·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피해보상 등의 통지 의무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 본 문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(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 한 판단을 포함한다)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
 - 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·검사·자문 등으로 인해 당초 통지된 결정기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(이하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

-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보상 청구"는 "이의신청"으로, "청구인" 은 "이의신청인"으로,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로 본다.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5조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재심위원회)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(이하 "재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단,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.
 -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위원회"는 "재심위원회"로 본다.

제16조(위임 및 위탁)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3조(이의신청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이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보상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본다.